

인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도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으로 결정(변경) 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 제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560-4761)에 비치 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5. 8. 3.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



1. 결정(변경) 취지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 다목의 기반시 설의(도로) 변경에 관한 계획

2. 위 치

-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일원

3. 결정조서 및 사유서

○ 인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
기정	중로	1	27	20	보조 간선	4,565 (215)	광로 29	대로 229	일반 도로	1966. 11	
변경	중로	1	27	20~25	보조 간선	4,565 (215)	광로 29	대로 229	일반 도로	"	

주1) ()는 금회 변경구간임.

○ 인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중로1-27	중로1-27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일부구간 폭원변경 - 연장 : 215m - 폭원 : 20m → 25m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 결정된 중로1-27호선 일부구간(215m)에 대한 도로폭원 변경

4. 지형도면 : 게재생략(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)

